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49

발의연월일: 2021. 4. 1.

발 의 자:조경태·서병수·구자근

홍석준 • 곽상도 • 윤두현

정동만 · 서범수 · 김상훈

정경희 · 김태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,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던 농산물의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.

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15개 시·도의 500만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하여 가계의 부 담과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른바 "농산물 꾸 러미" 정책을 실시하여 3,750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소비하였음.

이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 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	행		개 정 안
제9조(급식에	관한	경비의	지원)	제9조(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)
① · ② (생	략)		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③ 교육감은 「재난 및 안전관
				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
				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
				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
				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
				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
			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
				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
				있다.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
				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
			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
				원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
				한정한다.